

#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

## [제1조] 목적

본 운영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「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」을 준용하여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(이하"위원회")를 구성,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[제2조] 위원회 구성 및 운영

1. 내부 심의위원회는 경영지원부문을 위원장으로 하여, 위원 및 간사로 구성되며 필요시 사외 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, 월별 사안에 따라 안건 담당자 및 일정에 따른 위원 불참 시 차선임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.
2.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의장이 되며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 할 수 있다.
3. 심의위원회는 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및 내부 업무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심의업무를 수행해야 하며, 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## [제3조] 심의내용

1.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재·개정
2. 전사 공정거래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영
3. 개별 하도급거래금액이 3億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 및 가격 결정 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 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(사전심의)
4. 기존 하도급 거래 내용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 심의 : 대금지급 지연여부, 서면교부 지연 여부 등(사후심의)
5. 협력회사의 등록·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
6. 거래기본계약서, 상생협약 체결 등 계약이행에 대한 심의
7. 기타 법에서 정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등
8.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, 그 내용은 전사 인사규정을 따른다.

#### **[제4조] 사후관리**

1.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 회의록은 회의 종료後 7日 以內에 위원장 결재를 得한 後 전략구매팀 및 유관부서로 통보한다.
2. 위원회 관련 증빙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年 以上 보관한다.